

[서식 예] 개별토지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 ○ ○ ○ ○ ○ ○ ○ 전지 임야 ○ 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20 ○ ○ 기준의 개별토지 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처분의 내용

피고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등에 의하여 20〇〇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.)에 대하여 20〇〇. 1. 1.을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100,000원/m²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
2. 처분의 위법



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가.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(국무총 리훈령 제248호) 제7조. 제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, 개별토지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건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이하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한다.)를 활용하여 두 토 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 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되. 이와 같이 산정한 가격은 실제지가 에 영향을 주는 매우 많은 가격형성요인 중 지가산정에 편리하도록 주요한 토지 특성만을 조사하도록 단순화한 것이어서 적정지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이 유지되 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가산정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 인 차이, 지가산정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 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 형성요인등을 고려하여 지가산정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지가를 확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개발토지가격의 산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적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,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이 정확하여야 하며,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가격을 가감조 정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다른 유사토지와의 필지간 균형이 유지됨과 동시 에 필지별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이 토지특성의 변화, 주변여건의 변화, 표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산정되어야 합니다.
- 나.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 지가결정은 위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이 정하는 산정방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 치 못하는 것인바, 제소기간 등의 문제로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 자세히 주장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소장부본

1. 납 부 서

1통

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